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군의문사를 중심으로 -

박주상, 권영복

한국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대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하지만,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사망하며, 이러한 사망은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의 30년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1,413명 이상이며, 이중에서 사망의 원인이 자살로 처리된 자가 4,303명 이상으로 37.7%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연평균 143명의 젊은이들이 군에서 목숨을 잃는 수치이다. 즉, 매년 1개 중대의 병력에 해당하는 고귀한 인명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군내의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안전사고나 특히 차량사고 등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군의 발표대로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살률에 비례하여 군의문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군내 사망사건 중에서는 소속부대 및 군조직에 의해 망인의 사망원인이 은폐, 조작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30년간의 군내 사망사건 및 자살사건을 검토함과 동시에, 군의문사 진정 사건을 조사하였던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 사건 현황을 분석을 통하여 군내 사망사건 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군의문사, 군 수사, 자살

1. 서론

현대의 군은 군사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의 권위적·지배적 관계의 군대구조가 완화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이계수, 2003: 313). 더욱이 민주화의 획기적 진전과 사회 각 분야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군내에서도 장병들의 기본권 보호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문제시 되어왔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성희롱 방지 등 인권 침해 예방교육과 계층별, 계급별 다양한 의사소통체계의 확립 및 복지수준의 개선, 병영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과 후속조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권보호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이미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송성룡, 2008: 66).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하여 일부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

실이다. 군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군기 빠진 병사를 만든다는 시각과 군 지휘관에 대한 지휘권의 침해로 보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2).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의 대부분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들어가는 군은 폐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타¹⁾나 가혹행위²⁾ 등의 폭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 내의 사망사고의 발생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박주상 외, 2009: 67).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 동안 군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³⁾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민원이 줄기차게 제기되었다(임승택, 2006: 2).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도 군의문사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군에서는 많은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망사건에 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유족들의 의구심 또한 일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 이러한 사망사고는 군인 개인적으로는 고귀한 생명을 잃는 것이며, 그의 가정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군의 전투력 손실과 사기저하 등을 초래 할 수 있으며(인길연·김용현, 2007: 90),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대에서는 자살 및 의문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예방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단순히 이미 발생한 사고의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박기주, 2006: 87).

이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과거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의 신장이라는 적극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김광식, 2004: 31). 특히 인권에 있어서 가장 큰 침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의혹 또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여전한 이유를 군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 1) 구타란 고의로 주먹, 발, 손바닥, 팔꿈치, 머리 등의 신체와 붕, 막대기, 야전삽, 총기 등의 도구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 등을 뜻한다(육군본부, 2004: 258).
 - 2) 가혹행위란 정상적인 훈련 및 규정된 열차려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방법과 정상인의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육군본부, 2004: 258).
 - 3)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의문사’란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이다(제2조).
 - 4) 연합뉴스(2010. 6. 11.)에 의하면 “2010년 6월 8일 새벽 1시 20분께 전남 해남 육군 모부대에서 자살한 이등병이 사고 전 선임병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나 가혹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군의 석연치 않은 태도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은 사고 후 발생 장소를 초소가 아닌 생활관 난간으로 외부에 알리는가 하면 자살 배경에 대한 설명도 명쾌하지 않아 유족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2011년 2월 8일 PD수첩에서 군내 자살예방 프로그램인 그린캠프에서 생활하다가 자살한 황○○ 이병의 주제로 “어느 병사의 일기, 그는 왜 죽음을 선택 하였나”를 방송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II. 군 사망사고 처리절차의 개관

1. 군 사망사건 처리절차 관련 규정

군에서의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휘계통이나 수사기관의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률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검찰관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⁵⁾ 제264조에서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4조⁶⁾에서는 검시조서 작성, 검시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사체 처리와 관련된 규정 등이 있으며, 이는 사망사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처리절차 외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법률은 「군인법」 제54조로서 군인의 공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였을 때 유족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처리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⁷⁾ 다만, 이 조항의 하위법령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전사자 및 순직자의 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 공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전·공상과 비전·공상을 구별하면서 그 해당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각 군 본부 등에 전·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사건에 대한 처리 및 보고 등 지휘계통을 규정한 행정규칙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규칙인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규정」⁸⁾은 군인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내 사망사건 처리절차에서 전사, 공무상 사망 등의 사망구분에 대한 것과 사망의 보고 및 통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을 근거로 육·해·공군의 각 군마다 사망사건에 대

5) 현행 「군사법원법」은 그 체계와 형식, 내용면에서 일반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수사체계 역시 일반 수사절차와 기본절차는 동일하나 군이라는 조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에 수사절차 및 제도상의 운영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만중, 2005: 316).

6) 대통령령 제16793호 일부개정 2000. 4. 22.

제24조(변사자의 검시) ① 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구두로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군인사법<법률 제8584호, 일부개정 2007. 8. 3.>

제54조(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8) 국방부 훈령 제392호, 1989. 6. 10.

한 처리규정을 개별적으로 두고 있다. 육군은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 9)과 「영현처리 규정」, 해군은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10), 공군은 「전공사상자 및 영현처리 규정」 11)등이 있다. 육군규정 941호는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²⁾ 이러한 규칙들 역시 군내 자살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취급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사망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의 행정규칙들 외에도 「군검찰업무처리지침」, 「범죄수사활동규정」 13) 등에서 사망사건 처리와 수사 절차에 대한 몇 개의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군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대체로 ①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보고절차, ② 유가족에 대한 통지절차, ③ 사망 구분절차, ④ 국가보훈처, 유가족 등에 대한 사망확인의 통보절차, ⑤ 영현처리 등 기타 행정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청맥, 2008: 5-8).

2. 지휘계통의 보고 절차

군사법제도는 군의 명백한 군기를 유지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에 차질이 없도록 전투력을 보전하고 발휘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장병 개개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각급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주용태, 2008: 53). 따라서 지휘관의 사건 처리에 대한 결심을 좌우하는 내부 보고 절차도 사망 구분, 형사사건 처리여부의 판단 등 향후 전개사항에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사망사건 처리에 있어 최초 보고시의 사망 원인 판단이 차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고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보고절차는 사망사건 발생시 24시간 내¹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하는 ‘속보보고’와 7일 이내에 사건 전말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서면보고’로 구분된다.

1) 속보보고

군부대 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소속부대장은 그 사실을 24시간 내에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전문보고¹⁵⁾를 해야 한다. 여기서 ‘소속부대장’이라 함은 해·공군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을 의미하지만, 육군의 경우에는 장성급 부대장을 의미한다(육군규정 제17조). 이처럼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건 처리에 있어 24시간 내의 신속한 최초보고를 규정한 이유는 군대 내에서의 사망은 중대한 인명손실이라는 측

9) 육군규정 167, 2007. 1. 1.

10) 해군규정 4-20, 2006. 3. 30.

11) 공군규정 13-2, 2006. 5. 1.

12)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은 제88조 ‘사망사고 발생시 조치’라는 표제로, 1. 관할 현병대 신고 및 현장보존, 2. 유가족 및 유관기관 통보, 3. 관할 현병대 도착시 조치사항, 4. 유가족 도착시 조치사항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3) 육군규정 142.

14) 공군은 12시간 이내.

15) 전문보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또는 속보, 유선 등을 이용해서 각 군 본부로의 신속한 보고를 의미한다.

면도 있지만, 인적자원을 비롯한 전투력 등 군자원에 대한 손실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각 군의 참모총장이 가능한 한 빨리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서면보고

사건발생 24시간 이내의 속보보고를 이후에는 사망사건 발생 7일 이내에 사망확인조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¹⁶⁾ 사망확인조서에는 군사법경찰관과 소속부대장이 사망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구분에 대한 소견 등을 작성하고, 사망진단서에는 군의관이 사망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망종류·사망원인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망구분’이다. 사망확인조서에는 전사·순직·사망(사망은 다시 일반사망·변사·자살로 구분된다)으로 구분된 ‘사망구분에 대한 소견’과 사망진단서의 병사·외인사(외인사는 각종 중독·기타의 재해사·자살·타살·기타 등으로 구분된다)·기타 및 원인불명으로 구분된 ‘사망의 종류’가 있다.¹⁷⁾ 따라서 군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향후 사망자에 대한 처리, 특히 유공자 인정 등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사망확인조서와 사망진단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기재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법무법인 청맥, 2008: 15).

3) 헌병보고

상급부대에 대한 사망사건 소속부대장의 보고 책임이 있는 위와 같은 인사계통 보고와는 별도로 군사법경찰인 헌병은 「범죄수사활동규정」 제2절에 따라 사망사건 발생 보고를 하게 된다. 헌병보고는 최초보고, 중요사건보고, 추가보고, 분석보고 및 수사종결보고로 세분화된다. 또한 모든 사건의 등급을 분류하고, 중요사건의 경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중요사건보고서를 작성하며, 모든 사망사건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급 헌병대를 경유해 각 군의 헌병부서로 보고한다. 육군의 경우 발생 즉시¹⁸⁾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헌병보고는 사망확인조서를 작성할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통상 이루어지고 사망원인에 대한 최초 판단이 추후 ‘사망 구분’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유가족에 대한 통보 절차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와 헌병보고가 이루어지며, 외부적으로는 유가족에 대한 통보절차가 이루어진다.

16) 국방부 훈령 제5조 제1항.

17) 국방부 훈령 제6조 제1항.

18) 해군은 3시간 이내, 공군은 8시간 이내.

하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떠나 있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자식의 죽음이 폐쇄적 구조인 군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 처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통보는 사망사건이 의문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각 군에서는 군내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가능한 유가족에게 빨리 최초 통지를 하도록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¹⁹⁾ 국방부 지침인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은 “유가족에게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인 통지의무를 두고 있으며, 육군규정 제88조에서는 사고 발생 부대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또는 참모가 유가족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유가족에게 개인의 견 또는 추측에 의한 발언²⁰⁾을 해서는 안 되며, 확인된 사실만을 통보²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4. 사망사건 조사 절차

1) 군 수사기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는 없으며 일반 형사사건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검찰관과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사회에서 형사소송법에 의거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과는 달리, 군사법경찰관²³⁾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동법 제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계급상 상관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관의 계급에 따라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64조 제1항에서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경우에는 검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망

19)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해군규정 제6조, 공군규정 제19조 제1호.

20) 특히 ‘자살’이라는 말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21) 위 규정에서 정한 통보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 “오늘 00:00경 일병 000가 원인불상으로 보급창고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원인과 동기는 헌병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즉시 부대로 오셨으면 합니다.”

22) 공군은 군내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해 소속부대장은 4시간 이내에 당해 유가족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유가족이라 함은 ① 처, ② 자녀, ③ 부모, ④ 조부모, ⑤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최초 전문에는 ① 사망자 계급 및 성명, ② 사망일시 및 장소, ③ 사망원인, ④ 시체안치 장소 및 연락처, ⑤ 간략한 조의, ⑥ 시체처리 방법의 문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은 유가족에 대한 사전통보의 방법으로서 “00(계급) 000(성명)는 00년 00월 00일 00:00시 000(어디)에서 000(어떻게) 전사, 순직, 사망)하였음을 알리며, 조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내방여부 또는 시체처리 절차의 회신을 바랍니다.”와 유사하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군사법원법」 제43조 및 제46조에 의하면 군사법경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권의 식이 부족한 의무부무 사병에게까지 군사법경찰의 권한을 주고 있다.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가 된다(김응규, 2008: 68-69).

2) 군의 사망사건 조사 절차

군의 사망사건 조사 절차는 「군검찰사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6793호, 일부개정), 「범죄수사활동규정」 제6절, 「군검찰업무처리지침」 제14절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의하며 크게 현장출동, 현장검증 및 검시, 부검, 사건종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1) 현장출동

군사법경찰관은 군내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과 함께 즉시 사고발생 장소로 출동을 하여 사체 검안을 위한 군의관, 기타 참여인에 대한 출석 협조를 의뢰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헌병의 수사구조는 과거 부대 단위에서 지역 단위인 지구수사대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지구수사대에서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다. 지구수사대 내에 전문장비를 갖춘 감식반을 운영하여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식을 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비 및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 감식반이 도착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이 변질되어 감식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관과 수사관의 정확한 역할 및 지휘 관계가 확립되지 않아 발생 당시의 부대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 현장검증 및 검시

현장검증을 위해 검찰관은 현장보존 및 외부인의 접근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유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유가족이 입회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하게 되며, 현장검증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서 군사법경찰관이 변사체의 상태, 현장상태, 사고발생 상황, 사망자 소지품 등을 조사한다.

검시는 사망의 원인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시력 등 오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관 또는 검찰관의 지시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군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와 참여 군의관의 사체검안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²⁴⁾ 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부검

사망사건이 변사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관은 사체를 가까운 군병원 영안실로 후송 시킨 후,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 과학수사 연구소 소속 법의학 군의관의 참여하에 부검을 실시하여 사인을

24)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24조.

명백히 해야 한다. 모든 변사체는 부검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인이 명백하고 변사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사인에 이의가 없으며 부검을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사건종결

부검이 끝난 후 법의학 군의관이 유가족들에게 사인을 설명하여 유가족들의 의혹을 해소한 후 사체를 유가족들에게 인도된다.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사사건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기재한 변사사건기록을 검찰관에게 송부하고, 검찰관은 사건 기록을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하여 사인을 타살, 변사, 자살 등으로 변사사건부에 기재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III. 군 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의 문제점

1. 군 사망사고 발생 현황

1) 군내 사망사건 발생 및 자살처리 현황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1,413명이고, 이 중에서 자살로 처리된 자가 4,303명으로 37.7%에 이르며, 연평균 143명의 군인들이 자살을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시설인 1980년~1995년까지 총 16년 동안 총 8,981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559명이 사망하였고, 1996년~2009년까지 14년 동안 2,462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176명이 사망하였다. 이중 자살로 처리된 자는 권위주의 정부시설에는 3,263명으로 36.4%이었으나, 최근 14년은 1,115명으로 45.2%에 이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살자의 경우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 군내 사망자 발생 및 자살처리 현황

구 분	사망자(명)	자살자(명)	자살처리율(%)
1980-95년	8,951	3,263	28.7
1996년	359	103	33.7
1997년	273	92	41.1
1998년	248	102	43.9
1999년	230	101	45.1
2000년	182	82	41.0
2001년	161	66	50.0
2002년	158	79	46.0

<표 1> 군내 사망자 발생 및 자살처리 현황(계속)

구 분	사망자(명)	자살자(명)	자살처리율(%)
2003년	150	69	49.6
2004년	135	67	52.0
2005년	123	64	37.2
2006년	100	66	66.0
2007년	96	68	70.8
2008년	134	75	56.0
2009년	113	81	71.6
총 계	11,413	4,303	37.7

※ 2006-2007년 자료는 해·공군이 제외된 육군의 사망자 발생 및 자살처리 현황임.

※ 자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6; 임승택, 2006: 24; 조범석, 2008: 35, 각종 언론자료 등 재구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사건 현황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의문사 사건들의 사망 연대별 소속 군별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육군이 4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군이 39명, 전·의경이 29명, 공군이 22명, 경교대가 4명, 기타 3명, 불상 2명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 보았을 때는 1980년대가 1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990년대가 111명, 2000년대가 101명으로 나타나, 1980년대에 들어서 군내의 의문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 진정사건 사망 연대별 소속 군별 분포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전·의경	경교대	불 상	기 타	소 계
1940년대	1	-	-	-	-	-	-	-
1950년대	72	2	3	-	-	2	1	80
1960년대	61	2	2	-	-	-	1	66
1970년대	85	6	4	3	-	-	-	98
1980년대	105	8	5	4	-	-	-	122
1990년대	78	14	6	10	3	-	-	111
2000년대	78	7	2	12	1	-	1	101
총 계	480	39	22	29	4	2	3	579

※ 진정 사건 600건 중 각하, 중복, 병합, 회송 20건과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1건을 제외한 579건에 대한 통계임.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15.

3) 진정사건 사망연대별 과거 수사결과 사망유형 분포

군내 사망사건의 사망연대별 및 과거 수사결과 사망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50년대의 주된 사망원인이었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1970년 이후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 총기사고는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70년대까지는 9% 미만이었던 의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35%나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망의 유형에 있어서 의사나 총기에 의한 사망건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3> 진정사건 사망연대별 과거 수사결과 사망유형 분포

구 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소 계
총기사망		11	22	38	43	30	24	168
의 사		2	1	8	33	37	43	124
병 사		40	19	13	6	6	5	89
추락사망		1	3	1	6	11	16	38
교통사고		6	6	7	10	4	3	36
익 사		2	5	9	4	9	2	31
음독사망		1	7	6	6	2	3	25
폭발물사망		2		8	9	4	2	25
행방불명	1	1	1	3		1		7
전 사		5						5
질 식 사					2	3		5
타 살				2	1		1	4
분신사망				1		1	1	3
화재사망		1				1		2
동 사				1			1	2
중 독 사		1				1		2
감 전 사					1			1
기록없음		5	2					7
기 타		2		1	1	1		5
총 계	1	80	66	98	122	111	101	579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7).

4)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 4> 위원회 조사결과

구 분		사 건 수	구 분	사 건 수
진 상 규 명	타살로 인정	17	기 각 · 각 하	117
	공무상 질병	22	취 하	186
	사 고 사	40	진상규명 불능	48
	군복무 환경성 사망	167	기 타	3
	소 계	246	총 계	600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21).

<표 4>를 보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되었던 600건의 사건 가운데 최종적으로 246건(41%)이 과거 군의 수사기록과 다르게 진상이 밝혀졌다. 과거에는 자살, 변사 또는 사고사로 취급되었던 사망사건들이 조사결과 타살 17건, 공무상 질병 22건, 사고사 40건,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167건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은 354건이며, 이중에서 위원회 조사과정 중 진정인이 진정을 스스로 취소한 취하가 186건, 군 수사기관의 기존 수사결과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이 98건 등으로 나타났다.

2. 군 사망사고 처리의 문제점

군내 사망사고가 끝내 군의문사로 남게 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국방부의 「군내사망 사고발생시처리지침」의 내용들 또한 아래의 열거한 내용들과 비슷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동안 군 사망사고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군의문사로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군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2009: 211-214).

1) 사망사건 발생시 현장 보존 및 초동조치의 미흡

군내 사망사건 발생 초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발생 부대원들에 의한 현장 은폐·조작이다. 사망사건에 있어 사건현장은 증거의 보고로서 철저한 보존이 요구된다. 국방부 지침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는 ① 현장 훼손 방지, ② 지체 없이 상급부대 보고 및 관할 헌병대 통보, ③ 사고현장 목격자 및 관계자 신병 확보 등을 규정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건 발생에 따른 당혹감 등으로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수사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기 위한 사건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임석택, 2006: 38). 이에 사건이 타살임에도 자살이나 사고사로 은폐·조작되어 군의문사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사 례	최00 사건 (경찰청, 이경, 1997)
	최00은 전입 후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사망 당일에도 장비창고 뒤에서 여러 명의 선임병들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를 정도의 구타를 당하였다. 망인의 상태가 위태롭자 선임병들은 망인을 장비창고 앞으로 옮겨 방치하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후송도중에 사망하였다. 당시 중대장 등 지휘관들도 위와 같은 은폐·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해 00경찰서는 실질적인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만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군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04).

둘째, 수사기관의 초동조치 미흡 및 부실한 수사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① 철저한 사고현장 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② 사고현장 주변의 증거물 확보, ③ 사망자 및 관련자 행적 등 광범위한 주변수사, ④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사건은 일단 타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등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군의 사단급의 초동수사 담당 부대의 경우 전투 및 행정 위주 임무 수행으로 사망사건 발생 및 처리 건수가 매우 미미하다. 더욱이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경험이 부족한 일부 수사관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미흡한 실정이다(김호철, 2006: 34). 특히, 1990년대 이전 군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초동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의 사건들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부실

한 수사로 인하여 유가족이 사망의 원인과 경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사 례	노00 사건 (전의경, 이경, 1998)
	사건 당시 수사관은 사망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고 선임병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 당시 망인이 착용한 물안경조차 확보하지 않아 물안경의 종류, 특징 등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플랑크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고 수사기록에 기재하는 등 단순익사의 예단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208).

2)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 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국방부 훈령 및 각 군의 규정에 따라 인사, 공보, 작전, 정보, 헌병, 사고부대 등 관계 부서간에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협조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병은 ① 사고현장 출동, 사고내용 조사 및 최초보고 준비, ② 사고자 및 관계자의 신병확보, ③ 의문사항 배제를 위해 현장보존 및 초동수사를 수행하며, 법무는 사고관련 법률적 문제점 검토 준비, 인사는 ① 유관부서 사고조치 대응 협조회의 주관, ② 연락책임관에 의한 유가족 연락상태 확인, ③ 가족 및 친지 등 기타 인원 파악, ④ 빈소설치 준비 상태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헌병이 수사를 주도하지만, 사건처리 절차의 전반에 인사참모가 많은 역할을 주관하게 된다. 사고사 발생시 인사참모는 지휘관의 일반참모²⁵⁾이며, 헌병은 특별참모²⁶⁾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사참모가 사실상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유관부서의 사고조치 대응 협조회의를 주관하며, 특별참모인 헌병의 보좌를 받아 사망사건의 사고처리를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대지휘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 시스템이다.

더욱이, 지휘관의 개인참모²⁷⁾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법무참모 및 검찰관은 법률상 사체의 검사를 주재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을 뿐 구체적으로 사망사건의 관련 부서로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없다. ‘사고관련 법률적 문제점 검토 준비’를 할 뿐, 사건 조사에 관한 어떠한 임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인이 분명한 사건뿐만 아니라 변사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어 반드시 부검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률상 검사의 주재자인 검찰관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검찰관이 지휘권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아예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송광섭, 2005: 339).

결국 사망사건 처리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수사 및 사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무 참모

25) 참모는 지휘관의 임무수행 그리고 결심수립을 보좌하기 위하여 편성, 운용되며, 일반참모에는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교육훈련참모, 군수참모, 동원참모, 관리참모 등이 있다(지휘관 및 참모업무, 2003: 2-23).

26) 특별참모는 해당 책임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휘관이나 일반참모를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경리참모, 부관, 군종참모, 포병, 방공, 공병, 통신, 항공, 화학, 정비, 보급, 헌병, 의무, 본부근무대장 등과 기타 배속 및 지원중대장 등이 해당된다(지휘관 및 참모업무, 2003: 2-23).

27) 개인참모는 지휘관이 직접 조정하고 통제하기를 요망하는 업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며, 감찰, 정훈공보참모, 법무참모, 전속부관 등이 해당된다(지휘관 및 참모업무, 2003: 2-23).

에 의해 행정절차인 부대지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군의 일반적 사고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이 정한 구체적 절차 및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수사보다는 편의 위주의 행정적 사고가 앞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참모들에 대한 평정권,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지휘관과 참모의 역할관계에 비추어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의 조사방향과 결론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망사고의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헌병이나 검시 및 부검 등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는 군검찰 모두 조직상 지휘관에 속하여 지휘관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사망사고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33).

사 례	김00 사건 (육군, 일병, 2003)
	2003년 제00사단 예하 대대에서 병사 한명이 자살하였으며, 헌병대 조사결과 ‘복무부적응에 의한 단순 신병비관 자살’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단 검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병사들 및 간부들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중요한 사망사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검찰관과 법무참모는 이 사실을 당시 박00사단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신병비관자살로 끝난 사안인데, 왜 범무가 나서서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손을 떼라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법무참모의 건의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법무참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하여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두 번째 보고를 하였으나, 사단장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나는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다시 보고서를 반려하였다. 이후 육본 법무실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으며, 사고 부대의 연대장, 대대장, 헌병대장이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52).

3) 자살의 동기를 개인적 문제로 단정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으며, 자살에도 원인이 없을 수 없다. 만약 직접적·가시적인 동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작은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사관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망원인을 무동기 범죄로 속단하여,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이유로 단순화시키거나 정형화함으로써 유가족과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군 사망사고 중 자살사건의 경우 대부분 내성적인 성격과 가정 환경, 애인변심 등으로 사망원인을 국한시키며 사망사고에 대한 군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다.

사 례	김00 사건 (육군, 일등병, 1999)
	과거 수사결과 ‘평소 내성적인 성격 및 어려운 가정환경, 근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한 복무부적응이 사망의 동기’라고 하면서, ‘망인이 동성연애자였고 종말론자인 망인의 부친과 심각한 종교적 갈등이 있었다’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308).

4) 유가족의 궁금증 미해소 및 현장 접근 차단

군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것으로 믿었던 가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망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은 믿기 어려운 사실로 다가온다. 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사망

사건을 설명하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이 제기하는 합리적 또는 가능성 있는 의문에 대해 군이 일방적으로 묵살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유가족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망인의 사망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 없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유가족이 도착하기 이전에 현장을 훼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²⁸⁾

사 례	함00 사건 (육군, 이등병, 2002)
	사망사건 현장 발견자들의 총기 위치에 대한 진술이 다르고 사격장 이탈에 대한 간부들의 진술이 다르며, 검안 군의관과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사입구와 사출구 반복 등에 대해 객관적인 수사내용이 없었으며,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2시간 후에야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불신을 초래했고, 부검시 비디오 촬영을 하겠다는 유가족의 요구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유가족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221).

5) 지휘관의 성심성 언행

군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간부들도 근무 중 사망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사망사고가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대에서는 「전공사상처리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격한 반발 및 분노 등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순직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하기도 한다. 이는 망인의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대 간부의 배려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선심성 언행은 결과적으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가족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군의 처우에 대한 반감이 모아져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 례	박00 사건 (육군, 중위, 2000)
	사망사건 발생 부대장이 유가족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유가족은 망인이 당연히 순직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으로 알고 화장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구분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군을 불신하며 망인의 사망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53).

6) 언론 대응의 미흡

군의 언론대응이 미흡하여 사망사건의 진실과 다르거나 왜곡되게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언론이라는 속성상 군 사망사고 발생시 특정기사에 집중하게 되고 선정적, 추측성 및 군의 수사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편향보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의 언론 공보관계자, 수사관,

28) 이러한 과정에서 군의 수사결과를 불신하는 유가족들의 인수 거부로 시신 22구와 유골 46구가 아직도 미인수 되고 있다.

관련 부대 목격자 등 단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이 언론에 소개됨으로서 마치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정당한 수사의 공신력이 손상되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사 례	문00 사건 (육군, 이병, 2010)
"고양 이병 총상사망, 정확한 사인은?"이란 제목의 최초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 고양의 육군 모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인으로 보여지는 총상의 총탄은 문이병의 총기가 아닌 제3자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다. 몇일 후 언론에서는 문이병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하였다.	

※ 자료: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355).

IV.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안

1. 규정의 통합과 정비 및 통지의 정밀화

군의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이 국방부 및 각 군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입장과 특히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의문사'라는 용어 자체에 포함되어진 '불신'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방부 차원의 행정규칙으로 통합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 누구나 규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사고가 갖는 본질이 그러한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통합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통지의 절차, 시한, 주체, 내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유족들의 불만을 감안하면 통보과정에서 군 내부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은폐와 조작을 위한 시간별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발전되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절차의 정밀성과 더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수사, 사법절차의 정비

완벽한 초동수사를 위해 군에서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 부대에서도 그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장보존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이 현재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수사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의 보존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사망사고 현장을 발생부대에서 최대한 원형 보존하고, 수사관은 과학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 위주의 초동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동수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망사건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초 보고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군 검찰권의 강화가 요구하다.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통제방안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법경찰이 군내 범죄사건의 처리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권을 강화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법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대 내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최강욱, 2007: 110). 이를 위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검찰관이 초동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지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군사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송영선, 2007; 이상경, 2006).

3.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분리

사망사건 발생시 소속부대의 지휘관은 엄격한 지휘책임을 묻는 관행상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망사고의 원인을 가급적 사망자의 과실 또는 자살로 유도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망사고를 주로 담당하는 헌병이 소속부대의 직할대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휘관이 헌병으로 하여금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 부하인 헌병은 불법한 지휘관의 지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²⁹⁾ 이러한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과 ‘지휘관에 의한 조사 결과의 왜곡’ 등의 문제는 군의 입장과 유가족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군 지휘관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고, 군 관계자들의 태도 또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합리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군조직에 남아 있는 군 특유의 지휘관 위주 문화와 관행인 ‘지휘권의 절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요즘 어느 지휘관이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감정적 호소보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설령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감행하는 지휘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부대운영 방식과 지휘참모체계에서는 언제라도 지휘관의 부정적 의지가 간섭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종사자들조차 ‘지휘관의 결심에 따라야 하는 참모’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지휘관의 명령과 의지가 개입되어 수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당한 법절차의 준수를 해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법무법인 청맥, 2008: 117).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향후 군에 대한 수사를 민간의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오운성, 2008: 281; 최강욱, 2007: 108-109)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휘권과 사법권을 바라보는 군의 기본시각이 교정되어야 한다. 인권과 법치주의가 군내에서 확립되는 과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만 한다. 나아가 사법권의 인적·물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통해 검찰관이 군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송기춘, 2007: 95).

29) 2002년 12월 제정된 「군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지침」에 의하면 상급부대에서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행정규칙인 지침에만 명시되었을 뿐이며, 상급 헌병대라도 군의 정서상 계급 높은 지휘관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임석택, 2006: 92-93).

4. 유가족의 참여와 전문성의 강화

과거 군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직되고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보안 또는 군사기밀 사항 등의 이유로 언론보도를 차단함은 물론, 유가족의 접근마저도 철저히 통제하였으나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사망의 원인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군 관계자들의 고압적 태도에서 받는 상처와 불신이 적지 않다. 특히, 유가족들은 군 수사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들이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신을 높게 가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언론보도 요청 시와 유가족이 공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에 중요한 군사기밀 사항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그들의 요구에 철저히 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성의 있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든든한 신뢰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관계자, 현장 지휘관 및 참모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기관과 관련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인력·조직의 확충, 수사지휘 능력 향상, 수사관 선발 및 양성제도의 개선, 과학수사 시스템의 강화, 수사관의 자질향상과 교육체계 재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민간 분야에 이양하거나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보상, 배상 절차와 영현처리 절차 등의 정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고 유가족들의 의문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여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들의 슬픔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보상³⁰⁾, 배상제도, 국립묘지 안장 절차³¹⁾ 및 영현처리 절차 등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살처리자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³²⁾ 관련 용어의 정비와 더불어 현행 법령의 각종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와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의문사 유가족의 경우 진상이 규명되었다 해도 이미 수십 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입어 온 실질적 피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헌법상의 2중 배상금지 규정과 각종 시효제도, 연금 수급권자의 제한과 같은 요인들은 다시한번 유가족들이 국

30) 현재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은 민간 재해 보상의 60% 수준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국방부, 2009: 243).

31) 고승덕 의원 외 10명의 의원들이 2009년 9월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복무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자살한 자를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분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32) 대법원은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에서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군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군 자살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법원은 2000. 9. 5. 선고 2000다12914 판결,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등에서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이승택, 2007: 34).

가에 대한 한 서린 원망을 낳는 계기가 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외국의 예³³⁾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더불어 국가가 그들의 고통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모습이 실질적 혜택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과 장해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 연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V. 결론

근래에 들어 군과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비해 군내 사망사건이 많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4년간 활동으로 과거의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고, 군의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 졌다. 하지만 지금도 군에서의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군의문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내부적으로 군 사망사고 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의 배려와 대책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군의문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망사건 처리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및 각 군에 분산되어 있는 규정의 통합과 정비가 필요하며, 통지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완벽한 초동수사와 군 검찰권의 강화를 위하여 수사와 사법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과 왜곡이 배제될 수 있는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분리가 필요하다. 넷째, 사망사건 처리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수용되어 망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

징병제 하에서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군내에서 여러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국가와 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망사건의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그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군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을 때 그 나라는 국방이 진정으로 튼튼해 질 수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군의 미래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민·군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3) 미국의 경우 군자살자에 대한 '자살에서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업무의 관련성'조항을 보면, 자살할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자살은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야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살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살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대부분에게 보훈혜택을 주고 있다(안형주, 2006: 133). 또한 대만의 경우에는 군내 자살자에 대하여 '대체복무보훈법'에 의해 자살자는 병사한 것과 같이 인정하며, 질병 사망의 기준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군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방부. 2009.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김광식. 2004. 장병 인권논의의 쟁점과 발전방향. 서울: 국방정책연구소.
- 김응규. 2008. 군인의 기본권향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철. 2006. 군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처리자 문제현황. 군내자살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 종합보고서. 서울: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군의문사 실태와 군제도 개선 관련 자료집. 서울: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 박기주. 2006. 군내 부조리 실태분석과 예방대책: 장병자살사고 발생원인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1(3): 85-102.
- 박주상·문재태·김태곤. 군내 의문사 발생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5(1): 65-91.
- 법무법인 청맥. 2008. 군 사망사고 처리의 실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8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송광섭. 2005. 군사법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4: 337-353.
- 송기춘. 2007. 군 사법제도 개혁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영선의 국방FOCUS 5. 서울: 송영선의원실.
- 송성룡. 2008. 우리나라 군사음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사논문집. 59(1): 65-82.
- 송영선. 2007. 군기확립! 군인권 보호! 강한군대 만드는 법! 군사법제도 개혁법률: 쟁점과 전망. 서울: 송영선의원실.
- 안형주. 2006. 군내 자살 처리자 처우관련 소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 오윤성. 2008. 장병 인권침해 감소를 위한 군 인권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군 인권 관련개선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 247-291.
- 윤재민. 2008.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지방시대. 11(1): 165-193.
- 이계수. 2003.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23: 285-318.
- 이만중. 2005. 군 수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16(2): 315-342.
- 이상경. 2006. 군의 사법제도 개혁. 서울: 이상경의원실.

이승택. 2007. 군사살자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판례의 취지 및 이론적 배경. 군복무 중 자살에 관한 이해와 판례분석.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7년도 전문가 초청토론회 자료집.

인길연·김용현. 2007. 군사법규. 인천: 진영사.

임석택. 2006. 의문제기 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법석. 2008. 군인 자살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용태. 2008. 군사법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강욱. 2007.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송영선의 국방FOCUS 5. 서울: 송영선의원실.

21세기 군사연구소 편집부. 2008. 불편한 기억과 현실 앞에서. 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朴柱商: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2009년에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해양경찰,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 경찰조직관리, 경찰의 고객지향성, 군 의문사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해양경찰의 효율적 대테러 방안에 관한 연구(2011)", "교대군무 경찰공무원의 수면장애, 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2010)", "국제성해양범죄에 대한 해양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2010)", "경찰의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9)", "군내 의문사 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9)" 등이 있다(goodpolice@naver.com).

權寧福: 동국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공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1992.3-2009.8), 현재 동국대학교, 세명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등에서 헌법, 행정법, 경찰행정법, 소방행정법, 경비업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험금 압류 및 보험계약 강제해지 제한입법의 필요성(2011),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연구(2010), 국가보훈제도에 있어서 전공사상군경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2009), 국가보훈제도와 전공사상군경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2007), 보훈심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위법적 운영실태에 관한 고찰(2006), 아동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본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005), 경비지도사(2009), 조문정리용 소방관계법규연습(2011) 등이 있다. 현재 군경(軍警)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정립방안, 군경(軍警)의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가보훈제도의 개선방안, 군경 등의 이중배상금지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아동의 인권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sky8043@paran.com)

투 고 일: 2011년 03월 11일
수 정 일: 2011년 04월 01일
게재확정일: 2011년 04월 12일

The Study on Improvement for the Suspicious

- Deaths in the Military -

Ju Sang Park, Young Bok Kwon

South Korean men are joined the army to perform the duties of defense in their early 20s. Most of the people are back to society in serving the sacred duty of defense, but some of those die in military barracks so that this kind of deaths is a huge pain in the family. Moreover, the causes of deaths manipulated and distorted of the truth have been being made a lot more clear among those killed by the military. Those who have died in the military for 25 years are a total of 10,970 people 1980 to 2005 and 4,088 of the people have been dealt with as a suicide, amounting to 37.2%. These figures are saying that an annual average of 439 young people will lose their lives in the military. In other words, there was a massive loss of lives of a battalion every year. Recently, the number of deaths in military is reduced, but the suicide rate is increasing by far. Especially, while traffic accidents greatly are reduced in the military, the environment they can't help but commit suicide is not changed at all by the military statement.

In addition, in proportion to increasing of these suicide rate, suspicious military deaths go on growing as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has come up with devices to reduce occurrence rate of suspicious deaths looking around about situation of outbreak through the whole picture of the incident of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investigating mysterious deaths of soldiers.

Key words: suspicious deaths, military investigation, suicide